

보도를 의미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한 허위보도, 사실을 과장한 과장보도, 사실을 왜곡한 왜곡보도, 공정성을 훼손한 편파보도 등을 포괄한다. 정걸진(2008)은 오보를 “사실이면서 정확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이면서 진실한 보도를 제외한 모든 보도”로 정의한다. 이러한 규범적 정의는 바람직한 보도를 윤리적 차원에서 강조하는 효과가 있지만, 지시범위가 모호한 단점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다 지시범위가 분명하게 조작적 정의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보도”, “어떤 형태든 피해를 준 보도”로 초점을 좁혀 보았다.

오보가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보연구는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서 비롯되는 원인과 기자들의 행위 수준에서 비롯된 원인을 동시에 지적하고 있다. 임병국(1990)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과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나누었다.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생기는 원인으로 마감시간과 상업주의에 의한 경쟁을 꼽았고, 정보의 수집과 전달과정에서 발생하는 원인으로 오청, 오인과 같은 기자의 지각과정의 실수, 기자의 선입견, 편견, 조급성과 같은 심리적 결함, 기자의 경험미숙과 전문지식의 결핍 등을 들었다. 노광선(1995)은 오보의 원인을 기사작성 과정의 오기 또는 실수, 확인 소홀, 일방의견보도, 전문성결여 등과 같은 기자 개인에 의한 오보발생과 상업주의의 지나친 경쟁, 지나친 외신의존, 뉴스취재원의 실수나 부주의,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로 나누었다. 정걸진(2008)도 오보 발생의 원인을 기자의 개인적 미숙함과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관련된 내외적 구조적 요인으로 나누었다. 기자의 미숙성은 기자의 취재활동에서 실수뿐만 아니라 사건을 파악하는 능력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편집과정에서의 확인 소홀 등을 꼽았다. 또 이와 달리 기자 개인에게 귀책사유를 적용할 수 없는 언론의 산업적 속성과 구조적 요인으로서는 마감시간의 존재와 상업주의 경쟁, 광고주의 압력, 권력의 간섭, 취재원의 고의적 정보조작 등을 꼽았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요인과 정보 수집 및 전달과정에서 기자 개인의 자질 문제로 양분하는 것은 오보발생의 원인을 추론하는 영역을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산업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와 기자 개인의 문제는 엄격히 구별되지 않는다. 기자들의 취재관행은 언론의 산업적 속성에 적응한 결과이고, 기자들의 개별취재 행위도 취재관행의 구조적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귀

책사유를 개별 기자로 분명히 할 수 있는 단순한 사실의 확인 소홀도 그 기저에는 속보경쟁의 일상적 작업방식의 결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로렌스와 그레이(Lawrence & Grey, 1964)가 오보 발생의 6가지 원인-보도자료의 배경부족, 데스크의 편집관행, 보도의 드라마화 및 과대강조욕구, 뉴스 정보원과의 접촉부족, 부주의, 시간적 제약-으로 지목한 사항을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나누어 보면 대부분이 구조와 행위의 복합적인 작용의 결과임을 알 수 있다.

보도자료의 배경부족은 구조적 요인에 속하지만 기자의 추가취재를 통해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기자들은 취재원이 공신력이 있을 경우 오보에 대한 책임을 덜 수 있기 때문에 추가취재에 따르는 시간의 지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이 원인은 결과적으로 구조적 요인과 행위적 요인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한 것이다. 데스크의 편집관행은 정형화된 뉴스가치 기준 적용, 역피라미드 구조와 같은 정형화된 기사작성 구조의 요구, 마감시간 압박, 기사의 재미(선정성)에 대한 요구 등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관행도 구조적 요인이지만 데스크 개인의 욕심에 따라 정도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사안, 즉 행위 수준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나머지 항목도 이런 방식으로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의 원인이 서로 연관되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다.

오보발생의 원인을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으로 유형화 하는 것은 오보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기자에게 귀책사유를 돌리느냐 구조적 문제 때문에 불가피했기 때문에 관용을 베푸느냐는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언론분쟁에서 이 문제는 허위사실을 취재과정에서 진실로 믿을 수밖에 없는 충분한 근거가 있었느냐는 판단, 즉 '상당성'에 대한 판단의 문제로 나타난다. 이 판단에서 '상당성'에 대한 인정은 오보의 원인이 행위차원의 문제가 개입하지 않은 순수하게 구조적 차원의 문제라는 현실적 인정을 의미한다. 즉 모든 오보발생 원인은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이지만, 취재현실을 기준으로 행위차원에서 기자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취재노력이 없을 때 귀책사유를 구조적 문제로 돌릴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오보발생의 원인에 대한 유형화가 귀책사유를 평가하는 논리적 근거가 되기 위해서는 구조적 차원과 행위적 차원이 결합하는 양상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러한 이론적 작업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이 글의 논의 전개에 반드시 필요한 것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기존의 논의를 종합해 구조적 차원에서 행위적 차원으로 무게중심이 이동하는 정도

에 따라 순서대로 오보발생의 원인 혹은 배경을 재배치해 해보고자 한다.

2. 오보의 유형별 원인과 취재관행

1) 취재망의 구조적 성격과 오보

뉴스매체는 정기적으로 일정량의 뉴스를 공급하기 위해 정보를 효율적으로 얻기 위한 취재망을 구축하고 있다. 취재망은 뉴스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지리적 공간과 영역을 커버하면서도 최소의 인원으로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취재망은 ‘공간적 분할’과 ‘전문영역적 분할’로 구성됐다.(Tuchman, 1978)

‘공간적 분할’은 지리적 공간을 바둑판처럼 나누어 각 관할구역(beat)에 담당자를 배치하는 것으로 사회부, 전국부, 국제부 등이 주로 이 방식으로 조직된다. ‘전문영역적 분할’은 정치, 경제, 문화 등 담당하는 전문분야를 경계로 취재망을 구성하는 방식이다. 대개의 언론은 이 두 가지 방식을 결합해서 취재망을 구성한다.

이 취재망 안에서 실질적인 취재는 출입처 취재와 현장취재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출입처는 정보가 집결되는 정보의 병목이다. 현장은 뉴스 사안이 발생하는 지리적 공간이다. 이상적인 취재는 이 두 가지 방식이 교차되는 것이지만, 대개의 취재는 보다 효율적인 출입처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출입처 취재는 효율적인 반면 중간에 취재원을 매개해서 정보를 얻는 단점이 있다. 즉 정보를 얻는 경로가 현장관찰이 아닌 취재원 인터뷰(타인의 입을 통해 정보를 얻는 모든 취재행위)에 의존하게 돼 있다. 여기서 오보의 위험성이 발생한다.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습득, 전달과정의 기자의 실수 및 곡해 등의 위험성에 노출되는 것이다.

여기서 오보의 귀책사유를 일차적으로 구조적 차원으로 돌릴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은 취재원의 의도적인 정보조작과 취재원 자체의 잘못된 정보 제공이다. 즉 고의든 실수든 취재원이 원 정보 자체를 잘못 전한 경우이다. 하지만 이 경우도 취재원이 국가기구나 공신력 있는 사회단체 등의 공식발표자인 경우에 한해서만 행위적 차원의 책임이 면책된다. 나머지 경우, 고위공무원이라도 공식발표가 아닌 경우, 사회저명인사라도 정파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기타 개인적 취재원은 사실 확인의 책임이 기자에게 있기 때문

에 행위차원의 노력을 해야 한다.

2) 상업주의 경쟁과 오보

오보의 발생원인 중 언론산업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원인으로 가장 많이 지목되는 것이 상업주의 경쟁이다. 언론의 상업주의 경쟁은 크게 속보성 경쟁과 선정성 경쟁의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감시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는 상업주의 경쟁의 산물이라기보다 정기적으로 뉴스를 생산하기 위한 뉴스생산 공정의 구조적 장치이다. 하지만 마감시간을 당겨서 경쟁매체와 속보성을 다투는 형태로 상업주의와 연관된다. 언론산업의 속성 중 속보성은 광범위하게 뉴스 생산 관행에 영향을 미친다. 미국 기자들이 ‘말뚝(pegs)’으로 부르는 뉴스가치 적합성 판정 틀(한국 기자들은 일본어인 ‘야마’를 이와 유사한 의미로 사용한다), 정형화된 역피라미드 구조의 기사쓰기 등이 ‘신속-정확’이라는 형용모순을 실천하기 위한 편집관행이다. 뉴스 적합성 판정틀은 빨리 뉴스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이며, 역피라미드 구조는 정보를 빨리 기사로 작성하고 빨리 편집하기 용이한 기사틀 이다. 이러한 관행은 사안을 틀에 맞춰 기계적으로 파악하는 과정에서 보고 싶은 사실만 보는 인식의 편향성을 유발, 기사의 전체적 의미를 왜곡하는, 즉 ‘주관적 오보’¹⁾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속보성이 오보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객관적 오보’에서 더 직접적으로 나타난다. ‘객관적 오보’는 날짜, 시간, 장소 등 기사에 표기되는 파편적 사실의 부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객관적 오보는 행위 차원의 잘못이지만 많은 기자들은 ‘속보성’을 상황적 요인으로 제시한다. 실제로 오보 발생의 기저에는 속보성이라는 구조적 차원이 있지만 속보성이 기자의 잘못을 정당화 할 만큼 직접적인 경우는 드물다. 매우 중대한 사안이면서 매우 긴급한 상황인 경우, 즉 사실 확인을 위한 물리적 여유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만 오보의 구조적 차원의 요인으로 속보성이 제시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도 국민의 알권리라는 관점에서 중요하고 긴급해야지, 상업주의 경쟁의 관점에서 긴급한

1) 베리(berry)는 오보를 날짜, 시간, 장소 등 개별적인 사실에 관한 오보를 ‘객관적 오보’, 지나친 강조나 의미의 축소, 생략, 과장, 부적절한 제목에 의한 오보를 ‘주관적 오보’로 나누었다. 객관적 오보는 정확성의 실패, 주관적 오보는 사실성(혹은 진실성)의 실패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것은 내부사정일 뿐이다. 상당성에 대한 관점에서 보면 기자가 생각하는 ‘필연성’ 과 ‘긴급성’은 상업주의의 관점에서 그런 것일 뿐인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경우는 ‘상당성’에 대한 인정을 받기 어렵다. 대부분의 ‘객관적 오보’는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실수로 볼 수 있다.

상업주의 경쟁의 또 다른 형태는 선정성이다. 선정성에 대한 학문적 정의는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기자들의 편집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를 흥미 있게 만드는 과정의 과장, 왜곡, 생략 등과 같은 논리적·수사학적 오류’로 볼 수 있다. 저널리즘 글쓰기 교재에 나오는 ‘심각한 내용을 재미있게(현장에서는 섹시하게라는 표현을 즐겨 쓴다)’라는 표어는 저널리즘의 속성이 독자들의 시선을 끌기 위한 선정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말한다. 선정성을 통한 상업주의 경쟁은 ‘보도의 극화’, ‘주관적 가치 판단 과잉의 리드 남발’, ‘경마식 보도’, ‘외설적 소재의 남용’ 등과 같은 형태의 부정적 편집관행을 불러온다. 하지만 보도의 선정성 자체는 오보의 원인이 되는 경우는 드물다. 대개는 기사가치를 높이려는 기자의 욕심이 직접적 원인이 된다.

3) 기자 집단의 이익을 위한 취재관행의 전유와 오보

취재관행은 언론산업의 구조적 성격에 적응하면서 형성된 기자들의 작업방식이다. 이런 의미의 취재관행은 언론사 차원에서 규범적으로 정립된 것이다. 즉 기자들의 묵시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유하고 있는 직업적 관습으로 언론윤리강령을 통해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이 취재관행이 실천되는 과정에서 개별기자들의 직업적 이익을 위해 2차적으로 형성되는 ‘부정적 양태’의 취재관행들이 있다. 낙종을 피하기 위해 무리지어 다니는 패거리 저널리즘(pack journalism)은 대표적인 사례이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잘못된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기자들의 경쟁적 취재가 가져다주는 사실 확인의 과정을 거세함으로써 오보를 확산시키는 원인이 된다. 패거리 저널리즘은 회사의 특종과 속보의 요구를 현장기자들이 카르텔을 통해 무력화시키고 속보경쟁의 고단함을 피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언론산업의 속성 때문에 생긴 속보경쟁의 구조적 관행을 기자들의 행위차원의 관행으로 전유하는 전형적 경우라 할 수 있다. 또 출입처 취재제도에 의존해서 출입처의 발표 자료를 사실 확인 없이 그대로 받아 적는 ‘발표 저널리즘’도 기

자집단의 편의를 위해 출입처 제도를 전유한 '부정적 양태'에 해당한다. 한 기자의 기사를 여러명이 동시에 제공받는 기사 풀(pool)제도도 예측 가능한 사안에 대해 현장기자들이 노동력을 아끼려는 편익적 취재관행이다. 이러한 유형의 취재관행은 취재경쟁을 회피하는 것이 핵심인데, 결과적으로 사실 확인의 절차에 대한 경쟁을 없앴으로써 오보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높이게 되는 것이다.

4) 개별기자의 실수 및 자질부족과 오보

오보의 원인에 관한 기존의 논의에서 오보 발생의 원인이 구조적 차원과 직접적 관계없이 기자의 행위차원의 문제로 귀인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기자의 실수, 심리적 편견, 취재경험의 부족, 전문지식의 부족 등이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기자의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을 꼽을 수 있을 것 같다. '기자의 실수'는 단순한 실수로 숫자나 이름 등의 오기와 같은 '객관적 오보'로 오보의 계기가 실수이기 때문에 사실 확인의 필요성 자체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이다. '나태로 인한 사실 확인 소홀'은 주로 일방적 주장이나 불분명하고 미심쩍은 사실을 그대로 보도해서 오보를 일으키는 경우로, 사실 확인의 필요는 느끼지만 추가적인 확인 취재를 하지 않은 경우이다. 이 경우 오보의 유형은 '주관적 오보'가 많다. '심리적 편견'은 사안에 대해 일방향적 시각을 갖고 있음으로 해서 한 측면만을 취재해서 보도하는 경우로 역시 '주관적 오보'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취재경험의 부족'과 '전문지식의 부족'은 보다 막연하고 포괄적인 원인으로 경험이나 지식부족으로 사안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데서 다양한 형태의 '주관적 오보'를 발생시킬 개연성이 높다.²⁾

이렇게 보면, 오보를 만들지 않기 위해 기자는 취재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으며, 사실 확인에 성실하고, 실수를 하지 않도록 늘 긴장하고 집중해야 한다. 하지만 기자도 사람인 이상 이런 조건을 늘 갖추기는 어렵다. 리프만(Walter Lippman)은 기자가 객관적 전달자로서의 자질을 다 갖추기 위해서는 '초인'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이

2) 이 문제는 기자의 전문성과 관계된다. 기자의 전문성은 취재 및 기사작성의 기능적 숙련, 담당영역에 대한 전문적 식견, 언론윤리에 대한 인식과 준수의 3가지 요소를 요건으로 한다.

말은 다분히 역설적으로 기자는 완전한 객관적 전달자로서의 사회적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구조적 차원의 원인이 아닌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에 대해서는 오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통해 언론분쟁을 줄여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언론분쟁을 일으키는 오보의 유형을 취재관행의 관점에서 보면, 기사의 사실이 허위인 경우, 사실은 맞지만 공표해서 안 될 사실을 공표한 경우, 사실도 맞고 공표해도 되는 사실이지만 표현이 잘못된 경우의 3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경우는 기자가 노력해도 사실 확인이 안 되는 사안이 종종 있기 때문에 행위차원의 노력으로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다. 하지만 피의사실의 공표나 사생활 관련 사실의 공표가 대부분인 두 번째 경우는 기자가 '법의 테두리'를 정확히 알고 노력하면 행위 차원에서 극복이 가능하다. 주로 제목의 과장이나 해석상의 과도한 주관개입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 번째의 경우는 기초적인 선정성에 대한 최소한의 자제 노력과 언론윤리에 대한 지식만 있어도 근절이 가능한 경우이다.

행위차원의 오보 원인을 줄이려면 먼저 허용되는 언론자유와 법적 테두리를 정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언론윤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에서 다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된 사건과 언론소송 사건에 나타나는 언론분쟁의 쟁점을 통해 '법의 테두리'를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취재관행에서 보완되어야 할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Ⅲ. 언론분쟁의 유형별 쟁점과 취재관행의 문제점

1. 피해구제 제도로서의 언론중재제도

언론보도로 인한 피해의 구제방법은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은 민·형사 소송과 함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법원이 아닌 법정 기구에 의해 언론분쟁의 해결을 추구하는 한국의 독특한 제도이다. 언론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추후보도, 손해배상 등의 조정과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피해구제가 되지 않는 경우는 법원에